

품명	온도계·습도계·정밀측정기기		
HS code	9025.80		
관세율(%)	MFN('25)	'25	
		FTA	RCEP
	11	4.9	미양허



선정 사유	▶ 해당품목의 수출은 최근 5년간 등락을 반복하다가, '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8.4% 증가하며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함		
	한국의 연도별 對中 수출동향(HS code 9025.80) (단위 : 천 불, %)		
	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	2020	4,947	108.1
	2021	4,706	58.7
	2022	3,220	-35.9
	2023	2,489	-51.1
	2024	7,001	77.3
	2024.3	821	54.6
	2025.3	1,876	128.4
	▶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,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제조 인프라 확산에 따라 정밀 측정기기 수요가 급증함. 한국산 제품은 높은 기술 신뢰도와 우수한 데이터 연동성으로 對中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1분기 수출 증가 품목으로 선정함		

우리나라 對중
수출동향

(HS 9025.80)

▶ 전년 대비 온도계·습도계(HS 9025.80)의 하위 품목 중 습도계(HSK 9025.80-3000)와 기타 온도계*(HSK 9025.80-9000)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2025년 1분기 수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타 온도계 품목에서 큰 폭의 수출 증가가 나타남

* 기타 온도계 : 온,습도 센서·복합 기상 측정 장비·스마트시티용 통합센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음

한국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9025.8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 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	
			2023년	2024년	2024년 1분기	2025년 1분기
		총계	2,489	7,001	821	1,876
1	9025.80-1000	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	49	17	16	2
2	9025.80-2000	기압계(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36	103	0	0
3	9025.80-3000	습도계	1,405	5,441	417	391
4	9025.80-9000	기타	999	1,440	389	1,483
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9025.8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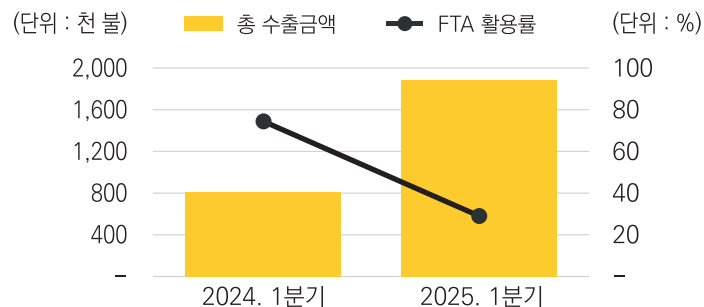
▶ HS 9025.80(온도계·습도계) 對중 수출금액은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FTA 활용률은 감소하였음

- '24년 1분기 74.3% '25년 1분기 29.6%로 나타남
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한-중 FTA의 경우 CTH, RCEP의 경우 CTSH or RVC 40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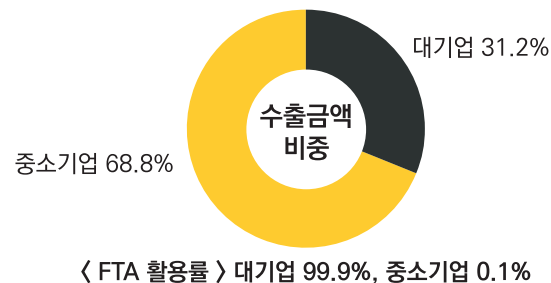
▶ '25년 1분기 기준, HS 9025.8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31.2% 중소기업 68.8%임
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99.9% 중소기업 0.1%임

[HS 9025.80 對중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4~2025.3)]



[HS 9025.8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5년 1분기)]



중국 수입 동향

- ▶ '25년 1분기 기준 중국의 HS 9025.80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, 대만, 핀란드, 필리핀,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만(13.9%), 핀란드(11.6%), 필리핀(9.2%), 태국(6%)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으며, 한국(3.5%)의 경우 수입 9위국에 위치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최근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, 산업안전 강화, 스마트 인프라 확산 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환경 측정기기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
 - 2024년 중국 정부는 「생태환경 모니터링 강화계획(2024-2027)」을 발표하고, 전국 주요 도시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온·기압·습도·대기질 등 다양한 환경 지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을 본격화함
 - 특히, 스마트시티·스마트제조·그린산업 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IoT 기반의 정밀 측정기기 도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, 이는 기술 신뢰성과 데이터 연동성이 뛰어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
 - ▶ 중국은 자국 내 화학물질 및 정밀 기기류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, 제품군에 따라 사전 인증 및 기술자료 제출이 요구됨
 - 특히, 전자·전기기기 등과 같은 제품군은 중국 강제인증제도(CCC) 적용 여부 확인*이 필요하며, 일부 품목은 측정기기 형식 승인 및 통신기능 관련 인증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음
- * 강제인증제도(CCC)에 해당되는 물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하며, 해당 마크를 받은 제품에 한해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함

〈 중국 강제인증제도(CCC) 개요 〉

◎ (개요)

강제인증제도 CCC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)는 중국 내 수입·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품질·안전 인증제도임

- 해당 인증 제도는 인증 대상 목록이 정기적으로 발표되며, 현재 전자·전기기기, 통신장비, 의료기기, 측정기기 등 32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중 FTA 특혜관세율은 4.9%, MFN은 11%로 한-중 FTA 특혜 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- 즉, 우리 기업들은 6.1% 세율 실익이 있는 한-중 FTA 특혜세율 적용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
- ▶ 최근 중국은 선정품목(HS 9025.80)에 대해 대만, 태국, 필리핀 등 아시아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
 -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와 지리적 접근성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. 즉, 우리 기업은 정밀 계측, 산업 자동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함
- ▶ 선정품목은 현재 강제인증제도(CCC)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나, 향후 제도 개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음
 -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관련 인증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